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886호 2014년 9월 16일(화)

공 고

○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안」 입법예고 ····· 2

○ 하수처리장 부지 점·사용허가 공고 ····· 13

회 람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공고 제2014 - 1호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안」 입법예고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속초국민체육센터 정상운영 따라「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업무 처리기준 및 회원들 이용수칙을 마련하여 체육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1) 회원모집, 회원접수, 회원카드발급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나. 센터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1) 센터 이용시간 및 초과요금 징수에 관한 내용

다. 사용료 징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1) 사용료 징수 후 업무처리 방법

2) 사용료 반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다. 이용의 연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라. 사물함 대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1) 사물함 대여방법,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

마.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1) 센터 시설물 회손시 변상에 관한 내용

바.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17-080 / 속초시 조양로 89

속초시 정보스포츠센터

(전화 : 033-639-3713~3715, FAX : 033-631-7223)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정보스포츠센터(☎ 033-639-3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규칙 제 호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이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월 단위로 등록하고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비회원"이란 1월 미만 단위로 1일 이용권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회원모집) ① 프로그램별 회원모집은 강사의 수와 시설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모집한다.

② 자유수영 회원은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제4조(회원접수) 회원접수 기간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회원 : 매월 20일부터 24일까지
2. 신규회원 : 매월 25일부터 28일까지
3. 추가접수 : 매월 29일부터 말일까지(모집인원 미달시)
4. 접수시간 : 기간 내 07시부터 20시까지

제5조(회원카드) ① 1개월 이상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② 최초 카드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분실 시 정해진 제작비를 부과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의거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은 1일 1회 2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초과 시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징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날 시금고(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수납의 경우는 매월 15일, 30일 정산후 다음 날 입금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할인율 하나만 적용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요구가 있을시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 월 이용일의 1/2를 초과한 경우는 이용료가 반환되지 않는다.

1. 별지 제5호 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2. 카드결재자는 일정액의 카드수수료를 추가 공제한다.

제10조(이용의 연기) ① 센터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한다.

② 회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1주일 이상 시 1개월 범위에서 1회만 연기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용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물함 대여) ① 센터 회원에게 개인 사물함을 대여할 때에는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월 사용료 : 5,000원

② 사물함 이용권을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③ 기간만료 후 보관된 내용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보관 후 폐기처분한다.

제12조(변상책임)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물 배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옷장(사물함) 열쇠분실 : 10,000원
2. 회원카드 분실 : 1,000원
3. 시설물 훼손 : 원상복구(실비변상 원칙)

제13조(안전수칙준수) 고객은 별표 1의 이용수칙을 준수하고 지도강사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퇴장 또는 경고조치 시킬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회 원 카 드

(앞면)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속초국민체육센터 회원가입 신청서

<table>
<tr><td>접 수 일</td><td colspan="2"></td><td>접수번호</td><td colspan="3"></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td><td>성별</td><td>남, 여</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 rowspan="2">연락처</td><td>집</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휴대폰</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신청구분</td><td>회원구분</td><td colspan="5">□성인 □청소년 · 군인 □어린이 · 경로대상자</td></tr>
<tr><td>신청종목</td><td colspan="5">□초급 □중·고급 □자유수영 □헬 스 □에어로빅</td></tr>
<tr><td>강습시간</td><td colspan="5">수영 (: ~ :) / 에어로빅(: ~ :)</td></tr>
<tr><td>신청기간</td><td colspan="6">월 일 ~ 월 일(개월) ※ 수영강습반은 1개월 단위로만 신청가능</td></tr>
<tr><td>접수구분</td><td colspan="6">□ 신 규 □ 재등록</td></tr>
<tr><td>할인대상</td><td colspan="4">□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가임여성(13세~55세)</td><td>할인여부확인
(증명서 등)</td><td></td></tr>
<tr><td>건강상태</td><td colspan="3">□ 양호 □ 치료 중 □ 회복 중</td><td>질환명</td><td colspan="2">(심장질환자/피부질환자는 필히기재)</td></tr>
</table>

회원접수 확인증	유 의 사 항
○ 접수번호 : ○ 접 수 일 : . . . ○ 신 청 자 : 상기와 같이 접수함. 확인자 : 속초정보스포츠센터 소장(인) **속초국민체육센터**	① 속초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1시까지** 입니다. ②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입니다 ③ 발급된 회원카드는 입장 시 안내데스크에 제출해 주십시오. ④ 센터 이용시간은 **1일 1회 2시간** 입니다. ⑤ 중환자 또는 지병(심장, 혈압이상)으로 인하여 운동이 곤란한 분은 입장 하실 수 없습니다. ⑥ 본 센터는 공공시설물이므로 **수영복(모자 필수), 운동복, 실내 운동화, 개인샤워도구(수건, 비누포함)는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모든 이용자는 시설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속초국민체육센터 ☎(033)639-3713~3715**

【별지 제3호 서식】

수 입 일 계 표

담당자	담 당	소 장	결재

【20 년 월 일】 (단위 : 명/원)

구 분		일 계		누 계		비 고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합 계						
회원	소 계					
	성 인					
	청소년·군인					
	어린이·경로					
비회원	소 계					
	성 인					
	청소년·군인					
	어린이·경로					

【별지 제4호서식】

감 면 신 청 서

접 수 일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감면내용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본인, 가족) ▢ 고엽제후유자(본인, 가족) ▢ 5·18 민주유공자(본인, 가족) ▢ 장애인(본인, 1~3급 장애인 보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할인(2종목이상, 3개월, 6개월, 12개월, 여성할인)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국민체육센터 귀하

기 재 요 령	1. 감면사유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국가보훈증, 복지카드, 수급자증명, 학생증 등을 기재한다. 3. 할인의 경우에는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별도의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할인의 경우는 수영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완 불 신 청 서

1. 원 금 액	금
2. 공제/일수	% + 일
3. 최종금액	금
4. 접 수 자	

결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회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내용	환 불	사 유			
등록기간		신청종목	▢ 수영 ▢ 헬스 ▢ 에어로빅 (강습반 :)		
적용기간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첨부서류 : 1. 신분증 2. 통장사본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속초국민체육센터 귀하

.....

완 불 접 수 증

[고 객 용]

회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내용	환 불	사 유			
등록기간		신청종목	▢ 수영 ▢ 헬스 ▢ 에어로빅 (강습반 :)		
적용기간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1. 환불금액은 환불신청서 작성일을 기준(환급적용 불가)으로 정산합니다.
2. 1개월 총 이용일수를 25일로 하고, 반환은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이용연기 신청서

<table>
<tr><td colspan="2">접 수 일</td><td></td><td>접수번호</td><td></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연락처 :)</td></tr>
<tr><td rowspan="3">연기내용</td><td>연기기간</td><td></td><td>해소일자</td><td></td></tr>
<tr><td rowspan="2">연기사유</td><td>질 병</td><td>출 장</td><td>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처 리 결 과</td><td></td><td>증빙서류</td><td></td></tr>
<tr><td colspan="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국민체육센터 귀하</td></tr>
<tr><td>기 재 요 령</td><td colspan="4">1. 연기사유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 증빙서류는 병원진단서, 출장명령서 등을 기재한다.
3. 연기는 7일이상시 1개월 범위내 1회만 가능
4. 연기신청은 연기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td></tr>
</table>

【별표 1】

▢ 안전수칙

1. 수영장 안전수칙

- 수영하기 전 반드시 샤워한 후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 수영복 이외의 복장은 착용을 금지합니다.
- 수영하기 전 반드시 수영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음주 후에는 절대 풀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전염성 질환, 심장질환,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수영 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추워질 때, 눈이 충혈 시에는 즉시 수영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체력관리상 1시간 이상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50분 수영, 10분 휴식)
- 수영장 내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지도강사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시는 퇴장,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배정된 강습레인 및 자유이용레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미 취학아동 및 키 120㎝이하의 어린이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취학 아동중 키 150cm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입장 하셔야 합니다.

2. 헬스장 안전수칙

- 헬스복과 실내운동화를 꼭 착용하십시오.
-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 기구사용법을 모르시거나 신체가 허약한 분은 지도강사와 상담후 운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보디빌딩 경력이 있는 분도 운동 각도 기준표를 준수하여 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구는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아주시고 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 주십시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헬스장 내에서는 반드시 지도강사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 기구에 앉아서 잡담하거나 오랫동안 앉아 있지 마십시오.

속초시 공고 제2014 - 573호

하수처리장 부지 점·사용허가 공고

하수도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장 부지 점·사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속 초 시 장

1. **사 업 명** : 해양심층수 사업에 따른 하수처리장 부지 점·사용

2. **점·사용자** : 속초시 대포동 535-2번지
(주)글로벌심층수 최 진 구

3. **점·사용 목적** : 해양수산물 개발사업 수산물보세장치장 운영

4. **점·사용 장소** : 속초시 대포동 542번지

5. **점·사용 면적** : 11,948㎡

6. **점·사용 기간** : 2014. 9. 17 ~ 2015. 9. 16 (1년)